

9

재류수속

(1) 재류기간의 갱신과 재류자격의 변경허가신청

현재 인정된 재류기간을 연장하여 재류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동경입국관리국에서 「재류기간갱신허가」의 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각자의 사정과 재류형태에 변화가 발생했을 때, 재류자격의 변경허가의 신청을 해야합니다. 각종신청과 재류기간이 만기되기전에 신청해야 하고, 기한 1개월에서 2개월전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수속에 필요한 입증자료는 재류자격에 따라 틀리고 발행후 3개월 이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명서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쿄입국관리국에 문의해 주십시오.

도쿄입국관리국 코후 출장소

토, 일, 경축일은 제외한다

창구취급시간 오전 9:00~12:00

오후 1:00~ 4:00

TEL 400-0031

코후시 마루노우치 2-14-13 다이타 빌딩 2층

전화 221-0206

신청서는 법무성홈페이지 (<http://www.moj.go.jp/>) 의 「행정수속의 안내 / 교시, 양식의 온라인 제공」 서비스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2) 재류자격 취득의 허가 신청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기의 「재류자격」을 얻기위해서, 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동경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의 수속을 밟아야합니다. 다만, 출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출국하는 어린이는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아이의 출생을 증명하는 문서(출생신고수리증명서 등) 등이다.

자세한것은, 동경입국관리국에 문의해주세요.

어린이의 여권취득에 대해서는 각국영사관에 문의해주세요.

(3) 재입국허가의 신청

현재, 허가된 재류허가증에 일시귀국한 사람은, 사전에 「재입국허가의」 수속을 받아들을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에 이 허가를 받지않고 출국을 하면, 일본에 돌아올때 비자취득 등, 대단히 번거로운 수속을 다시한번 해야만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았어도 출국전과 같은 「재류자격」이 나올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재류기간갱신과 동시에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면, 재류기간갱신허가인증 받을때,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등입니다. 자세한 것은 동경입국관리국에 문의해 주십시오.

(4) 자격외활동허가의 신청

재류자격이 「유학」이나 「취학」 등으로 재류중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외활동허가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취로가 되는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 공적인 증명이 되는 「취로자격증명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경입국관리국에 문의해 주십시오.

(5) 외국인 재류 종합안내센터

입국이나 재류에 관한 각종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통역 있음)

접수시간 평일(월~금요일) 오전 9:00~12:00 오후 1:00~4:00

장 소 도쿄입국관리국 도쿄도 미나토구 코난 5-5-30

전 화 03-5796-7112

※법무성 홈페이지 <http://www.moj.go.jp/>